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1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2.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0. 2.

다. 상정·의결일자: 2025. 10. 2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가. 제안이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2023. 1. 1. ~ 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다. 위탁 추진 필요성

장사시설의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위탁을 통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라. 위탁사무 내용

1) 위탁사무명: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2)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3) 위탁업무: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마. 민간위탁 시설 개요

(' 25. 9. 현재)

○ 공설화장시설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규모(m ²)	화장로수	화장능력	방식	화장시간
고성군 공설화장장	상리면 장치로 220-163	1985.10.	133.28	2	6구/일	무연무취 (등유)	1시간 30분

○ 공설봉안시설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규모(m ²)	봉안능력(기)	봉안(기)	잔여(기)
고성군 공설봉안당	상리면 장치로 220-163	1991.12.	482.19	4,561	3,291	1,270

○ 공원묘지·봉안묘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규모(m ²)	묘지(기)			봉안묘(기)		
				능력	매장	잔여	능력	봉안	잔여
장기공설 공원묘지	동해면 동해로 1236	2002.1.	7,381	327	259	68	138	21	117

바. 연도별 소요예산

시 설 명	소요예산(천 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836,200	269,674	280,503	286,023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811,321	261,544	272,211	277,566
장기공설공원 묘지 및 봉안묘	24,879	8,130	8,292	8,457

※ 2027년, 2028년은 최근3년 인건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름

○ 산출근거

시설명	구분	소요예산(원)	산출내용
고성군 공설 화장장 및 봉안당	계	261,544,400	
	인건비	74,820,480	4,056,320원×1명×12개월 (최저임금, 1일 8시간 근무) 2,178,720원×1명×12개월 (최저임금, 1일 4시간 근무)
	보험료	7,963,920	431,950원×1명×12개월 231,710원×1명×12개월
	유류비	101,060,000	2,000ℓ×1,630원×31회
	전기료	21,600,000	1,800,000원×12회
	복리후생비	800,000	200,000원×2명×2회
	수수료	4,240,000	잔인잔점검 등 수수료
	소모품 및 수선유지비	18,600,000	1,550,000원×12회
	폐기물 처리	9,000,000	9,000,000원× 1식
	대기오염 측정	18,000,000	1,500,000원×12월
	분진수거비	3,960,000	330,000원×12월
	기제사	1,500,000	1,500,000원× 1식
	장기공설 묘지·봉안묘	계	8,130,000
인건비		3,600,000	300,000원×12월
별초비용		4,500,000	1,500,000원×3회
공유재산 공제금		30,000	30,000원×1회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장사시설 지역주민 우선지원에 따라 민간위탁심의 위원회 심의선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장사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본 동의안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기술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 민간위탁 근거와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전문성 등 타당성에 대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는 전문가 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0. 2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